

일본 상속시장 확대와 자금이동: 금융기관의 대응

일본에서는 초고령화로 상속시장의 양적·질적 변화 진전과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 진행

- 일본 상속시장은 초고령화 진전, 가계자산의 고령층 편중, 자산가격 회복 등으로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는 추세. 또한, 상속자산의 부동산 비중 감소, 현금·예저금 및 유가증권의 비중 확대 등 상속의 질적 변화 동반
- 이러한 상속시장의 질적·양적 변화는 다양한 경로는 통해 자산이전을 확대시키고, 이는 다시 리테일 시장의 경쟁 심화를 초래해 금융기관 경영에 큰 변동요인으로 작용

상속시장 확대는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전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금융기관, 가계자산 등의 구조 변화를 촉진

- 초고령화로 인해 상속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①자산간, ②세대간, ③지역간, ④금융기관간 자산이전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그리고 가계금융자산 등의 구조변화를 촉진
- 상속은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등 資産間 이전을 촉발하는데 이로 인해 최근 고령가계의 자산구성에 변화 조짐. 2015년 상속·증여세 개정 이후 사전적인 자산간 이전이 활발
- 世代間 자산이전은 상속의 기본 기능이나 최근 일본에서는 老老상속으로 자산이 고령층에 집중되어 세대간 이전 효과가 억제. 일본은 세대간 자산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 상속·증여세 개정
- 상속은 지방에서 대도시로 대규모 자산의 地域間 이동을 초래. 자산 유출률이 25% 이상인 지방도 다수 존재하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은행 등의 자산유보율 유지 대책이 필요
- 金融機關間 이전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기관이 동일인가에 따라 다르며, 거래기관이 상이할 때 자산유출은 동일한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 최근 대형은행 집중 현상이 심화

상속에 따른 자산이전 확대와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가 금융상품 수요변화 및 리테일 시장 경쟁격화 등 금융산업에 큰 변화

- 일본에서는 상속과 자금이동이 리테일 시장을 둘러싼 금융기관간 경쟁을 격화. 금융기관들은 통상적으로 생전증여와 보험기능 등을 강조한 다양한 상품라인업을 구축하여 상속시장 확대 대응
- 업체별로 보면 지방은행은 상속에 따른 자산이전을 억제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다양한 상속관련 서비스, 상속정기예금 등을 통해 상속자산의 유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보험사는 사망보험 등 보험상품에 상속인 지정, 비과세 혜택, 납세자금 확보 등 장점을 이용해 상속시장에서 유리한 위

치를 접할 가능성

- 또한, 증권사도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우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라인업을 구성하여 상속시장에 참여. 금융기관의 대응 결과, 리테일 시장에서 상속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
- 상속을 통해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감소하고, 투자자산의 수요가 증대하는 경향. 상속은 세대간 자산이전 효과가 있고, 상속세는 자산재분배 효과가 있으나 초고령화는 세대간의 자산이전을 지연하고, 상속세의 자산재분배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내에서도 5~10년내 상속시장의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므로 금융기관들의 준비가 필요

- 국내 상속규모는 2020년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며, 최근 사전증여가 급증하는 등 상속시장의 질적·양적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금융기관의 대응도 본격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5년간 상속시장은 40~45% 증가 추정(사망자수 15%증가, 고령층 가계자산 25%증가 가정)
 - 더욱이 국내에서도 베이비부머의 고령층 편입과 노노상속이 겹치면서 가계자산의 고령층 집중이 가속화되어 상속시장은 규모와 내용 면에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이 일본보다 고령화속도가 빠르고, 베이비부머 인구도 상대적으로 많아 빠른 변화 가능
 - 다만 한국은 일본과 달리 상속세를 대신해 증여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시장 확대에 제약이 있을 가능성. 한·일간 상속·증여세를 비교해 보면 양국의 상속세율은 비슷하지만, 증여세는 일본이 초과하기 때문에 양국간 상속·증여의 선택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
 - 2016년 기준으로 상속세/증여세 과세액 비율: 한국이 0.82배, 일본은 11.7배
 - 베이비부머 인구비중, 사망자수 등을 감안할 때 향후 5~10년 내 국내 상속시장에 급격한 구조변화가 시작될 전망. 이에 금융기관은 자산운용 기능을 중심에 두고, 보험기능을 활용하며,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토탈 솔루션으로 대응할 필요
 - 일본 수준의 적극적인 자산이전은 베이비부머가 후기고령층에 진입하는 2030년경 가능 예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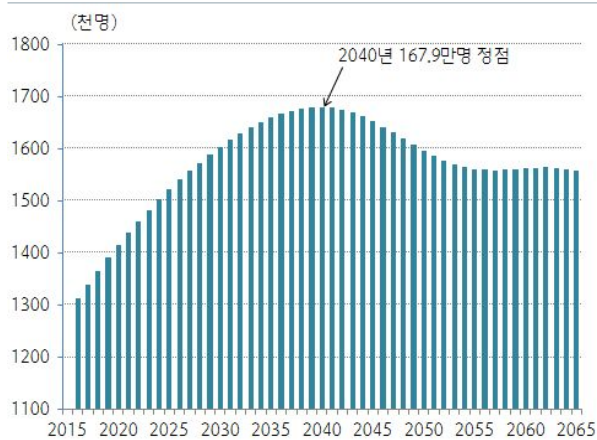
I. 일본의 초고령화와 상속시장 확대

1. 초고령화가 상속시장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를 초래

■ 초고령화 진전, 가계자산의 고령층 편중, 자산가격 회복으로 일본 상속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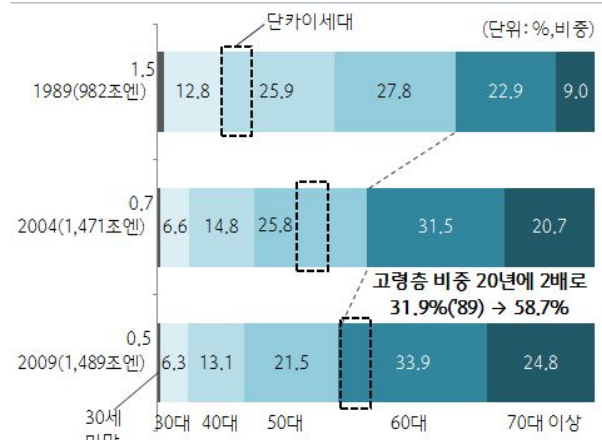
- 일본 상속시장의 빠른 규모 확대는 초고령화에 따른 사망자수와 이로 인한 상속발생 건수 증가가 근본 원인. 일본 상속시장의 규모는 이미 연간 50조엔 내외로 확대되었으며, 2040년까지는 사망자수 증가와 상속시장의 규모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15년 일본 상속규모는 노무라종합연구소(이하 'NRI') 50조엔, 일본 Fidelity퇴직·투자연구소(이하 '피델리티') 46조엔으로 추정
 - '30년 이후에는 단카이세대의 사망률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상속규모가 빠르게 확대 예상
- 또한, 가계자산의 고령층 편중이 심화되면서 상속규모도 비례해 증가.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 老老상속 확대로 인한 고령층 내에서의 상속자산 이전 등이 가계자산의 고령층 집중 및 상속시장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
 - '14년 기준 가계금융자산 1,700조엔 중 60%인 1,000조엔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유. 고령층은 '89년 총자산 982조엔 가운데 31.8% 보유에서 20년 만에 보유비중 2배로 증가
- 최근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회복도 고령층 가계가 보유한 자산가치의 상승을 통해 상속시장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아베노믹스 착수 이후 5년 이상 주가가 상승추세이고, '18년 전국지가가 27년 만에 상승

그림1 | 사망자(상속발생)수 추이



자료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그림2 | 연령별 금융자산잔고의 분포 추이



주 : 1) 2인 이상 세대 기준

2) 네모칸의 단카이세대는 해당 연령대를 표시한 것으로 자산보유액 비중은 아님. 다만 '04년 단카이의 금융자산보유액은 130조엔(비중 8.8%)로 추정

자료 : 일본 총무성,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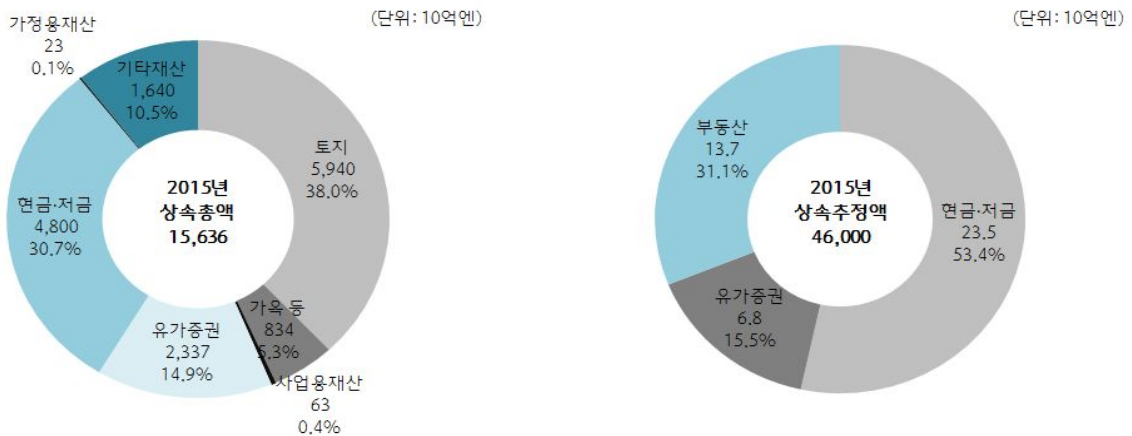
전환하는 등 자산가격의 상승 기대가 높아지고, 가계자산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가계 금융자산은 '12년 1,620조원에서 '16년에는 204조엔(+12.6%) 증가한 1,824조엔을 기록. 같은 기간 상속세 과세대상은 세법개정 효과까지 발휘되어 51.3%나 증가

■ 상속자산은 2016년 기준으로 총 50조엔 내외, 평균상속은 3,548만엔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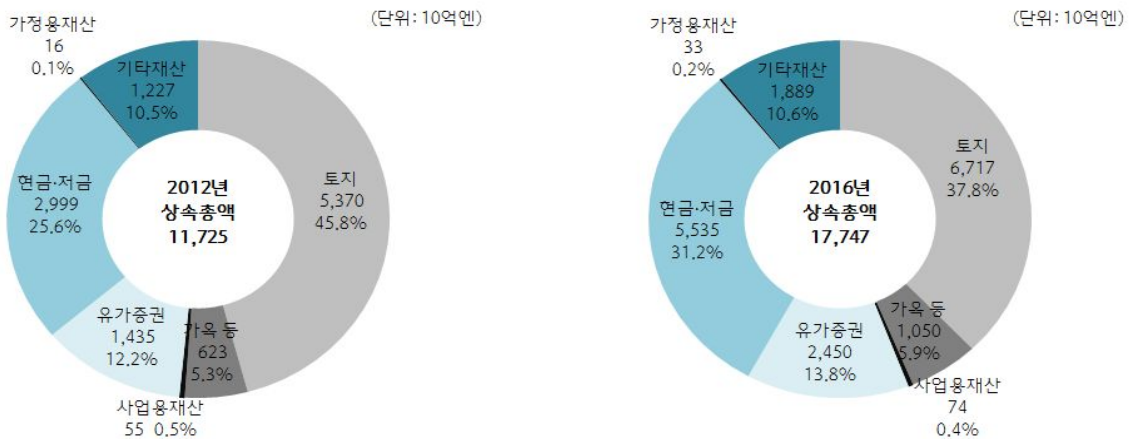
- 피델리티는 설문에 따른 평균 상속금액 3,548만엔, 연간 사망자 130만명을 근거로 '15년 일본상속시장의 규모를 46조엔으로 추정
 - NRI는 상속시장 규모를 '04년 45조엔, '09년 50조엔, '15년 55조엔으로 추정. 연간 1조엔 정도 증가하는 시장으로 파악

그림3 | 상속재산 내역(국세청 vs Fidelity양케이트)



자료 : 일본 국세청, 일본 Fidelity퇴직·투자연구소

그림4 | 상속재산 내역과 변화 추세(상속세 과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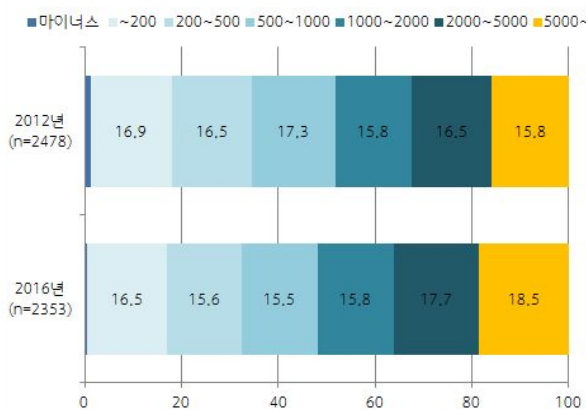
자료 : 일본 국세청

- 피델리티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상속금액의 평균 및 중간값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상속금액의 분포는 큰 차이가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속자산의 중간값과 평균값은 '12년 862.5만엔과 3,172만엔이었는데, '16년에는 각각 1,086.8만엔과 3,548만엔으로 증가

■ **최근 일본에서는 상속금액의 증가와 상속자산의 구성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상속시장에 관심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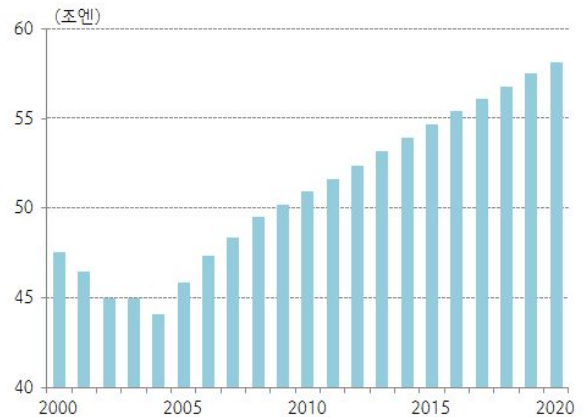
- 최근 상속자산 규모의 빠른 증가에 비례해 국세청 과세대상 상속규모가 급증하는 추세. 이는 상속세 개정에 따른 세율 증가가 직접 원인이지만 경기 및 자산가격 회복에 따른 가계자산 증가, 초고령화로 인한 상속건수 증가 등 기조적 요인들도 작용
 - 일본 국세청 상속세 과세대상 규모: 11.7조엔('12년)→17.7조엔('16년)
- 상속자산의 규모증가는 물론 상속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현금비중이 증가하는 등 자산구성의 변화추세도 뚜렷. 부유층의 상속자산이 부동산에서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이동한 것이 원인
 - 전체 상속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12년 51.1%에서 '16년 43.7%로 감소
 - 부유층이 상속세 절세를 목표로 수익성 부동산 구입시 대출을 동시에 일으켜 부동산 상속분이 감소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식도 이용
- 이 결과는 상속세 과세대상만 분석한 것이므로 비과세된 상속재산까지 포함한 전체 시장에서는 현금비중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
 - 피델리티가 '16년에 5000명 앙케이트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부동산 비중이 29.8%로 떨어지고, 현금이 51.1%까지 증가하며 유가증권은 14.8%를 차지

그림5 | 상속금액의 분포



자료 : 일본 피델리티

그림6 | 상속시장 규모 추정



자료: 노무라종합연구소

- 상속금액의 분포를 보면 상속규모가 가장 큰 5,000만엔 이상 그룹과 2,000~5,000만엔 그룹의 비중이 확대되어 자산규모가 큰 가계의 현금화 수요가 현금비중 증가를 주도

■ **상속시장의 질적·양적 변화가 자산이전의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심화가 예상**

- 상속확대가 지역간·금융기관간 자산이전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자산이전은 금융시장을 질적·양적으로 변화시키므로 금융기관은 여기서 파생되는 경쟁 격화에 대응 필요
 - 상속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가 리테일 시장의 경쟁의 격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상속시장의 경쟁력이 리테일시장의 우열을 결정
- 상속세 강화 및 증여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이 사전증여의 증가는 물론 자산처분의 증가, 금융기관의 사전증여 관련 상품라인업의 확충, 상속증여컨설팅 수요의 증가 등 구조변화를 유도하여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 상속세 강화와 증여세 완화를 통해 세대간 자산이전 활성화. 지출이 적은 고령세대에서 자녀교육 등 지출이 많은 40~50대로 자산을 이전해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 도모 목표
- 2013년의 상속·증여세 개정은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 및 규모 확대, 이로 인한 납세자들의 상속관련 금융수요 증가와 사전증여의 메리트 부각, 부동산 자산의 현금화 니즈 증가 등 구조변화 촉진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
 - '15년 상속액(피텔리티 추정) 46조엔의 1/3인 15.6조엔이 국세청의 상속세 과세대상

II. 상속시장의 확대와 자산이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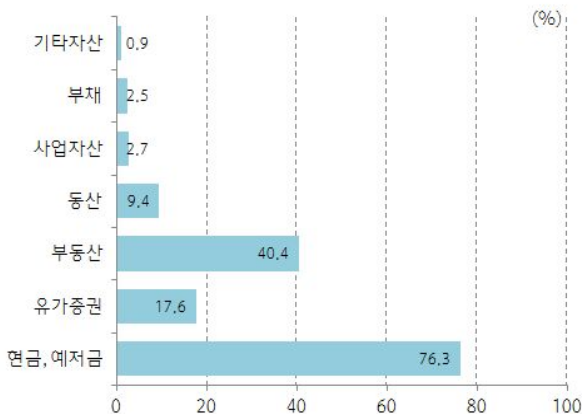
1. 상속은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전을 동반

- **초고령화로 인해 상속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①자산간, ②세대간, ③지역간, ④금융기관간 자산이전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그리고 가계금융자산 등의 구조변화를 초래**
 - 일본의 상속규모는 GDP의 1/10 수준인 50조엔에 도달. 인구구조와 연령별 자산분포, 가계자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2040년까지 상속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산이전의 확대와 경제·금융 구조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 상속은 자산간, 세대간, 지역간, 금융기관간 경로를 통해 자산이전을 유발
 - 첫째, '자산간 이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자산의 형태를 변경하는 사례도 증가
 - 최근에는 상속자산을 부동산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지배적인 추세
 - 둘째, 상속의 자산이전 효과 중 가장 분명한 것은 '세대간 이전'이지만 최근에는 초고령화 진전으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연령이 계속 증가하여 老老상속의 비중이 높아져 상속에 의한 세대간 이전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고령층 집중이 심화
 - 셋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지역이 상이한 경우 '지역간 자산이전' 효과가 커지며, 특히 지방출신 상속인들이 동경 등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아 상속자산이 높은 비중으로 지방에서 대도시권으로 이동하는 경향
 - 넷째, 상속자산이 대도시권의 이동은 지방은행에서 대형은행으로의 자산이전을 확대시키며, 특히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거래 금융기관이 상이한 경우 '금융기관간' 자산이전 비율은 동일한 경우의 2배 이상으로 증가
- **상속과 자산이전에 의한 자산편중 현상은 당국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화될 수 있으며, 리테일시장의 금융기관간 경쟁 격화도 예상됨**
 - 상속시장 확대와 이로 인한 자산이동의 증가가 결과적으로 고령층, 대도시, 대형은행 등으로 자산편중이 심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정책당국은 상속·증여세 개편을 통해 편중을 완화하고, 지방은행 등은 자산이탈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 상속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를 통해 한시적이기는 하나 고령층 자산의 양도를 유도
 - 자산이동은 자산 유치 경쟁의 격화를 의미하며, 금융기관들은 지역별, 규모별로 특화에 주력하게 되는데, 특히 은행 리테일 시장의 경쟁은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예상
 - 향후 금융권의 리테일시장은 상속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2. 금융자산간 이전: 부동산의 현금화, 유가증권의 현금화가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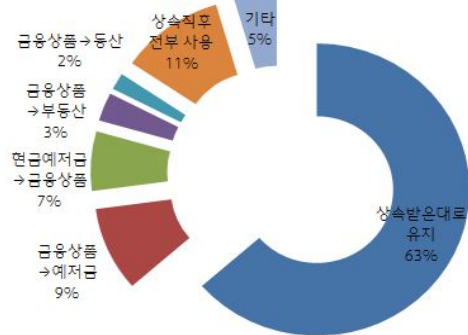
- 상속은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자산간 이전을 촉발하고, 이는 고령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상속·증여세 개정에 따른 사전적인 자산간 이전 유인 증가 등이 원인
 - 상속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40%선에 도달. 2016년 피델리티 설문에 따르면 상속자산의 76.3%가 현금 및 예·저금이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각각 40.4%, 17.6%를 기록
 - 부동산의 현금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 고령층의 가계자산 구성은 점차 부동산에서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이전이 확대되고, 이는 상속자산의 구성에도 반영되어 상속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중심이 빠르게 재편
 -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 하락도 원인으로 작용. 그 비중이 '95년 55%p에서 '05년 40%p, 최근에는 40% 미만으로 하락
 - '15년 이후 상속·증여세 개정이 부동산 현금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상속세 개정으로 과세기반이 확대됨으로써 과거 비과세 분이 과세대상이 됨으로써 상속 이전부터 부동산을 현금·예적금, 유가증권 등으로 이전할 유인이 증가
 - 특히, 고소득층에서 과거에 비해 상속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빠르게 하락하고, 현금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뚜렷
 - 보유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거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되거나 세금회피를 위한 금융자산 보유비중의 증가 등이 원인
 - 향후에도 상속자산의 구성변화는 고령자 보유자산의 구성 변화, 상속세제 변화에 대한 대응 등에 따라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이전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

그림7 | 상속자산의 내용



주 : 2016년 기준, 상속받은 자산의 내용
자료 : 일본 피델리티

그림8 | 상속후 금융자산간 이동



자료 : 일본 피델리티

■ 상속은 상속인의 자산운용 필요성 및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금융자산간 이전이 진행되며, 상속 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이전 기간은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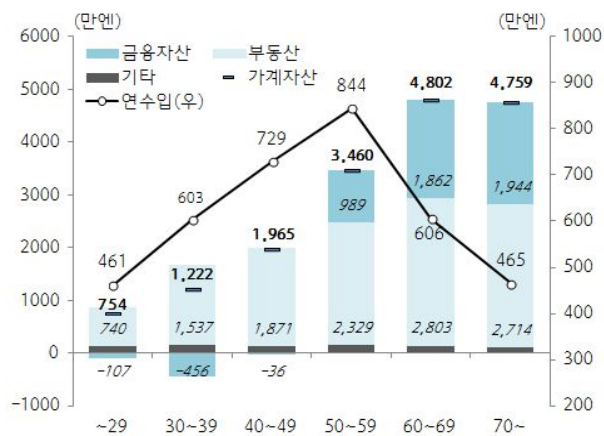
- 피델리티에 따르면 금융상품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70%가 상당 기간 원래 형태로 유지하고, 10%가 상속 직후에 완전 소진하여 약 20%의 금융자산이 타 자산으로 이전
 - 68.6%가 현금, 예·저금,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을 원래대로 남겨두고, 유가증권을 예·저금으로 바꾸거나(10.1%) 현금, 예·저금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경우(7.1%), 상속 직후 사용해버리는 경우(11.9%)도 있음
- 금융자산간 이전은 금융상품의 다양성과 규모를 증가시키며, 향후 자산이전을 용이하게 만드는 효과. 또한 일본 가계는 60세 전후로 퇴직금과 상속으로 보유자산이 현저히 증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의 보유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뚜렷
 - '14년 연령별 금융자산 보유는 50대 989만엔 대비 60대는 1,862만엔으로 2배 규모

3. 세대간 자산이전: 상속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전

■ 상속은 기본적으로 세대간 자산이전을 발생. 그러나 일본에서는 초고령화로 인해 老老상속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산이 고령층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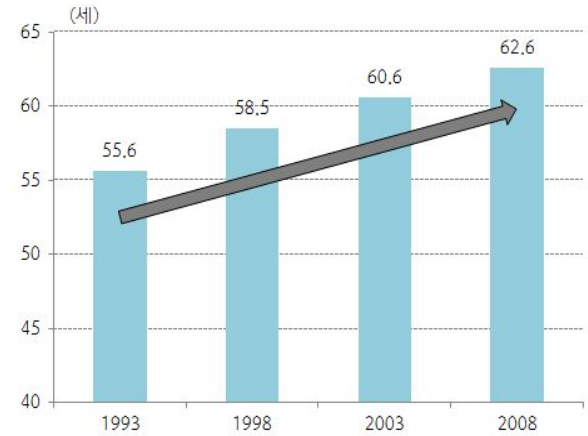
- 상속은 배우자 상속 등을 예외로 하면 기본적으로 세대간 자산이전이 진행되나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우 상속인의 연령대가 현저히 높아 상속재산이 고령층에 집중
 - 일본은 상속·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세대주의 연령대가 2000년 초반 이미 60대로 상승
- 즉 개별 세대 내에서는 세대간 자산이전이 진행되더라도 거시적으로 보면 고령층에

그림9 | 세대주 연령별 가계자산액(2014년)



자료 : 일본 통계청

그림10 | 상속·증여로 택지를 취득한 세대주의 평균연령



주 : 국토교통성 "토지기본조사"에 의한 추계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상속자산이 잔류하는 비율이 높아 젊은 세대로의 자산이전 효과가 현저히 제한됨

- 피상속인이 80대 이상인 경우가 70%에 달하며, 상속인의 연령대도 50~60대에 집중

● 세대간 자산이전은 상속자산의 형태, 거래 금융기관, 상속인의 자산·부채 상황의 변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속인의 금융행동 변화와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침

- 60대 상속인의 경우 상속은 물론 본인의 퇴직일시금 등을 일시에 수령함으로써 다양한 금융상품 수요가 다양화되고, 위험선호적으로 행동하는 경향

■ 일본 정책당국은 세대간 자산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 상속·증여세를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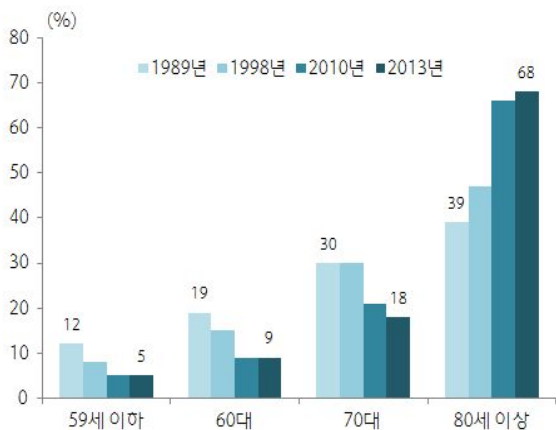
● 정책당국은 사전 증여·상속 등을 촉진하여 세대간 자산이전을 조기에 진행되도록 유도. 상속세를 강화하고 증여세를 완화하여 상속보다 증여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향

- 상속세 공제액을 "5,000만엔+1,000만엔×법정상속인수"에서 "3,000만엔+600만엔×법정상속인수"으로 강화하는 등 상속세 비과세 여건 강화
- 상속세 개정 이후 상속세 납부 비율이 4%에서 8%로 2배 상승, 상속세 납부규모도 1.8조 엔대에서 2.4조엔대로 증가

● 특히 자녀 교육비 등의 부담이 큰 40~50대의 소비위축과 이로 인한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조손간 교육자금 증여에 한시적인 비과세 적용 등 사전증여 방식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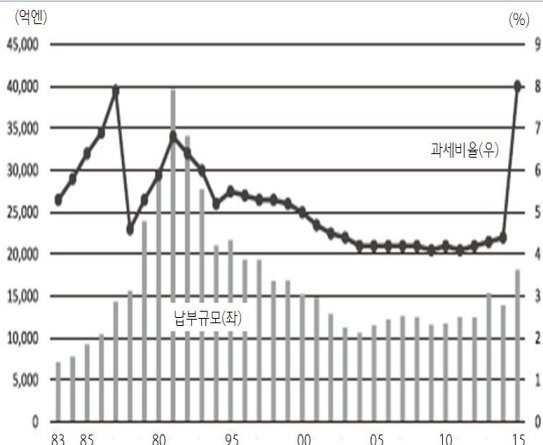
- '19.3.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손간 증여 중 교육비의 명목으로 1,500만엔까지 비과세. '15~'16년간 비과세 신청액은 7,712억엔 규모에 도달

그림11 | 피상속인 연령분포



자료 : 일본 통계청

그림12 | 상속세 과세비율과 납부세액의 추이



자료 : 日置瞬, "全国消費実態調査のマイクロデータを用いた相続税の推計," 「フィナンシャル・レビュー」134号, 2018.7에서 전제

[BOX 1] 조손간 교육자금증여 및 전용계좌

- 2013년 세제개정으로 교육자금의 일괄증여에 대한 비과세조치가 취해져, 직계존속 30세 미만의 손자녀에게 증여한 교육자금에 비과세
- 세부 내용
 - '13.4.1~'19.3.31중 30세 미만 수증자가 교육자금 충당을 위해 금융기관 등과 일정한 계약에 기초하여 수증자의 직계존속(조부모 등)으로부터 ①신탁수익권 등을 부여받는 경우, ②서면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금전을 은행 등에 예입한 경우, ③서면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금전 등으로 증권회사 등에서 유가증권을 구입한 경우, 신탁수익권 또는 금전 등의 가액 중 1,500만원까지 금융기관 등의 영업소 등을 경유하여 교육자금비과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증여세를 비과세
 - 이후 수증자가 30세에 도달하는 등 교육자금계좌에 관계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각출액에서 교육자금지출액(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지불한 금액은 500만원 한도)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해서는 계약종료시에 증여로 처리
- 비과세 적용 실적
 - 일본 국세청이 ‘교육자금비과세신고서’를 토대로 시산한 비과세각출액은 '15년 5,196억엔(85,587명), '16년 2,506억엔(43,716명). '15년 증여세부과 대상액 2조엔, 증여세 결정액이 2,000조엔 정도임을 감안하면 교육자금비과세 신고액이 증여세 대상액의 1/4에 해당

그림 i | 교육자금증여 전용계좌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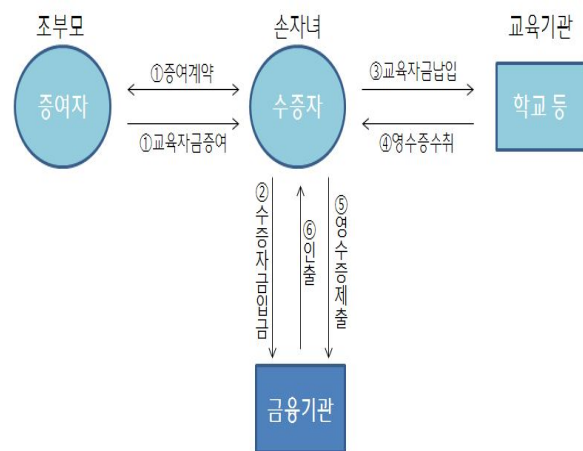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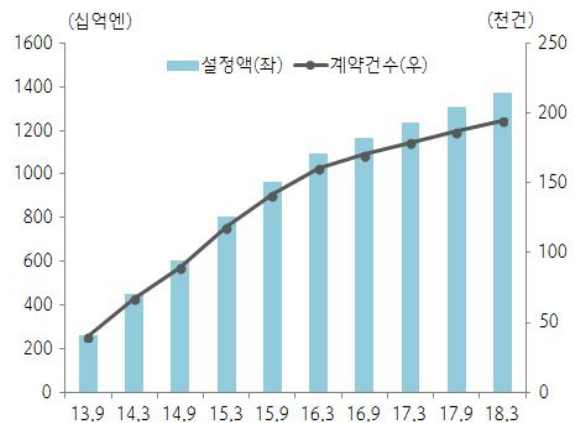


그림 ii | 교육자금증여의 수탁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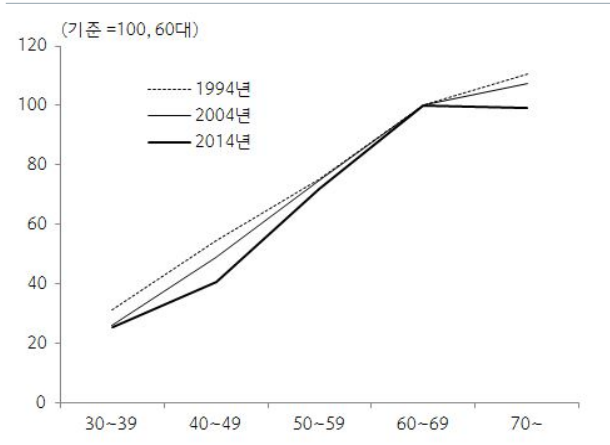
자료 :

주 : 2018.3월말 기준
 자료 : 일반사단법인신탁협회, “신탁 수탁 개황”

■ 상속 여부에 따라 투자상품 보유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상속은 가계자산·부채 구성에 큰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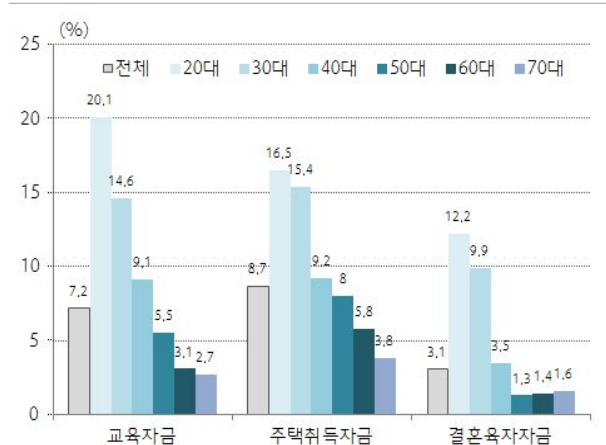
- 상속의 경험 여부, 상속 자산의 구성과 규모의 차이가 가계 자산·부채의 규모와 구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상속은 월급 등 항상소득(permanent income)과 다른 임시소득(transitory income)으로 인식되면서 지출이나 자산형성 등에도 항상소득과는 다르게 작용
- 예를 들어, 상속은 위험허용도가 높는데 NRI설문에 따르면 상속경험이 있는 가계는 35%가 투자상품을 보유하는데 반해, 상속경험이 없는 가계는 16%만 보유
- 또한, 초고령화의 진행으로 상속인들의 연령이 50~60대에 집중되고, 통상 60대에 주요 직장에서 퇴직하는 일본 가계의 특성상 60대에는 퇴직금과 상속자산이 집중되면서 가계 자산은 급증하고 부채는 급감하며, 자산 중 위험자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
 - 60대 이상 고령층, 자산가 그룹 등은 위험 허용도가 높아지며, 가계자산의 증가와 더불어 가계자산 구성도 다양화되는 것이 특징
- 특히, 상속인의 연령 상승으로 일본 가계자산의 70% 가량을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60대의 가계자산 증가가 다른 연령대를 압도적으로 추월
 - 60대의 가계자산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40대의 가계자산은 '94년 54.7, '04년 48.8, '14년 40.9로 하락했으며, 70대는 110.5, 107.3, 99.1로 하락
- 최근 일본에서는 상속·증여세 개정의 영향으로 생전 증여 활용 비율이 크게 증가. 증여세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교육자금, 결혼 및 육아자금 증여 특례가 시행중
 - 피델리티 설문에 따르면 고액상속인, 피상속인이 도시은행 이용자인 경우 생전증여의 활용

그림13 | 일본 연령별 가계자산 비교



주 : 60대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각 연령별 자산의 상대적 크기. 60대의 가계자산이 상대적으로 확대. 상속, 퇴직금 등에 의한 자산 증가가 원인
 자료 : 일본 통계국

그림14 | 생전증여 이용상황



자료 : 일본 피델리티

빈도가 높았고, 도시은행에서는 교육자금과 주택취득자금 증여 특례, 증권사에서는 주택취득자금증여 특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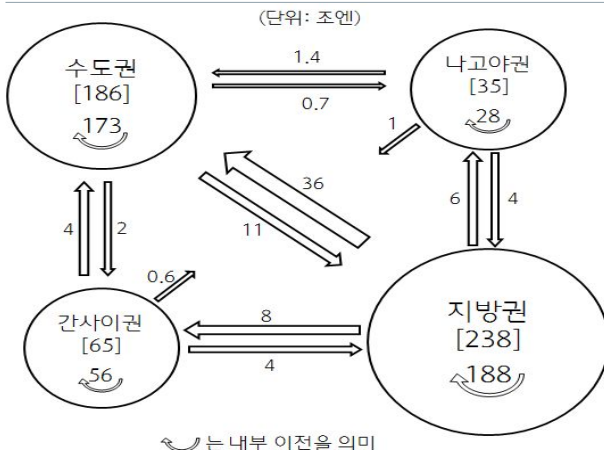
- 다음 세대로의 상속 준비고령을 앞둔 상속인들이 상속절차나 상속세 부담 등을 체험하게 되면서 향후 본인 재산을 상속할 경우에 대해 구체적 대응 필요성을 절감

4. 지역간 자산이전: 대도시 집중

■ 상속발생 증가에 따라 지방에서 대도시로 상속자산의 지역간 이동이 대량으로 발생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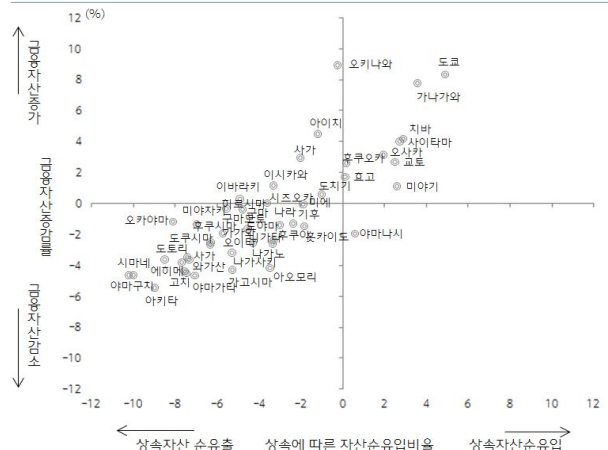
- NRI 추계(NRI생활자 1만인 앙케이트조사 2013년)에 따르면 '15~'24년 10년간 총 524조엔의 상속이 발생하는데 지역별로는 수도권 35.5%인 186조엔, 지방권 45.4%인 238조엔, 간사이권 65조엔, 나고야권에서 35조엔의 상속 발생 추정
- 상속자산의 이전은 수도권 등 대도시로 집중. 수도권은 186조엔의 상속분 중 내부에서 173조엔이 이전되고, 외부에서 28조엔의 순수입이 예상되고, 지방권에서는 238조엔의 상속분 중 50조엔이 외부로 이전되는데 특히 수도권으로 36조엔이 이전
 - 수도권 유출은 지방권 11조엔, 간사이권 2조엔, 나고야권 0.7조엔인 반면, 유입은 지방권 36조엔, 간사이권 4조엔, 나고야권 1.4조엔으로 28조엔 정도가 순수입
 - 상속재산 지역내 유보율(금액기준): 수도권 93.0%, 지방권 79.0%
- 피델리티의 설문(상속인 5,000인 앙케이트 2017년)에서 지역내 유보율이 수도권 등 도시권은 86% 수준, 지방권은 80% 미만으로 NRI 추계와 매우 비슷한 결과
 - 상속재산 지역내 유보율: 수도권 86.6%, 간사이권 86.0%, 지방권 77.7%

그림15 | 상속자산의 지역간 이전규모('15~'24년 추계)



주 : 10년간 상속자산 524조엔 발생 가정
 자료 : NRI 생활자 1만인 앙케이트 조사

그림16 | 상속자산순유출입과 금융자산증감('16~'25년 추계)



자료 : 다이와증권, "상속자산의 이전과 지역의 리테일금융시장의 미래"에서 전제

■ 상속자산의 유출률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은행 등의 자산유보율 유지 대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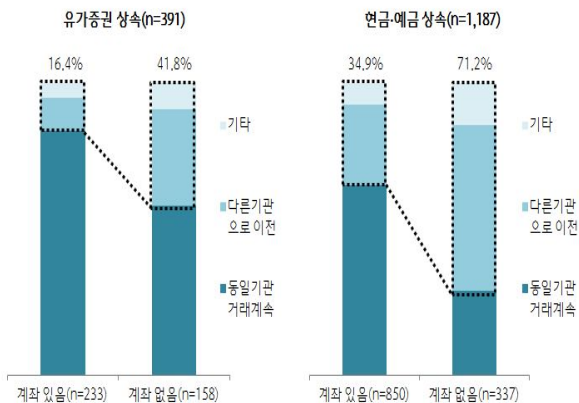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유출률에 큰 차이가 있는데 다이와종합연구소의 추계에 따르면 동북, 북관동,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유출율이 25%를 상회하여 이 지역 금융기관은 자산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SUMI 따르면, '14년 기준으로 수도권과 긴키권은 원래 가계자산의 48.1%를 보유하나 상속에 의해 52.1%로 상승
- 상속자산의 지역간 이전은 과거 지방에서 대도시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원인. 수도권 등 대도시 전입 인구는 60년대 후반~70년대 전반에 걸쳐 1,150만명 내외로 압도적으로 많고, 이들은 현재 62~71세에 분포되어 지방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비율이 높은 편
 - 대도시권 전입자수는 70~80년대 연평균 80만명 수준으로 60~70년대 110만명의 70% 선

5. 금융기관간 자산이전: 도시은행으로 집중

■ 상속 이후 거래 금융기관이 교체되면서 자산이전 발생, 유동성 큰 자산일수록 이전 활발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별거비율이 높을수록 상속을 통한 지역간 자산이전이 증가하고, 이 때 금융기관간 자산이전의 증가 가능성도 커지는 경향
- 금융기관간 자산이전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기관이 동일한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향. 즉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기관과 상속인의 거래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자산이전의 가능성이 매우 낮았으나 피상속인의 거래기관에 상속인의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유출비중이 현저히 증가

그림17 | 상속후 피상속인이 이용했던 금융기관과 상속인의 거래상황(유가증권 상속 vs 현금·예금 상속)



자료 : 노무라종합연구소 자료에서 전제

표1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이용 금융기관 조합

(단위: 명, %)

	응답수	도시 은행	지은·2지은	신용금고 조합	우정 은행	JA 은행	대형 은행	기타
도시은행	1,017	75.5	1.9	0.6	6.0	0.9	4.6	10.5
지은·2지은	531	12.4	42.4	1.9	12.2	3.4	6.8	20.9
신용금고·조합	181	11.6	12.7	37.6	11.6	3.3	3.3	19.9
우정은행	827	12.1	2.9	0.8	63.6	2.1	3.9	14.6
JA은행	312	9.0	5.8	1.6	15.7	53.2	3.2	11.5
대형은행	118	16.1	0.8	0.0	5.9	0.0	68.6	8.5
기타	85	12.9	12.9	1.2	8.2	1.2	9.4	54.1
기억나지않음	510	18.4	5.3	1.8	19.2	1.8	4.9	48.6
총계	3,581	30.9	9.7	3.0	23.3	6.3	6.8	20.0

자료 : 일본 피델리티

- 또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금융기관간 자산이전 비율이 상이해지는데 유가증권보다 현금·예금 등 유동성이 큰 상속자산일수록 유출률이 큰 경향
 - NRI조사에 따르면 유동성이 큰 현금·예금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거래기관에 계좌가 없으면 70% 이상 유출되며, 계좌가 있더라도 35% 정도는 유출
 - 반면 유동성이 낮은 유가증권은 계좌 있는 경우는 16.4%, 계좌가 없을 때도 41.8%만 유출

- **상속 후 금융기관간 자산이전은 지방은행 자산유출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전략이 필요**
 - 상속자산의 유보율은 도시은행이 76%인데 반해 지방은행은 42%에 불과하며, 신용금고·신용조합은 37.6%로 가장 낮음
 - 금융기관은 피상속인과의 우호적인 거래관계를 상속인에게 연장하려는 노력이 필요
 - 상속인이 상속자산 보유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전부터 자신이 이용해온 금융기관(74.9%)과 피상속인이 이용했던 금융기관(28.5%) 등임

III. 상속시장 확대와 금융산업 변화

1. 리테일 경쟁 격화에 대응: 자산이전과 금융자산 증가가 원인

- **상속에 따른 대규모 자산이동으로 리테일 시장을 둘러싼 금융기관간 경쟁 격화가 예상**
 - 상속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어 자산이전이 증가하고 자산구성이 다양화될수록 리테일 금융에서 경쟁 격화는 불가피
 - 상속시장 확대와 지역간·금융기관간 자산이전 확대에 대응해 자산 유보율을 높이려는 지방 은행·신용금고, 반대로 상속을 계기로 자산을 증대하려는 대형은행 사이의 경쟁이 심화
 - 최근 상속자산 중 현·예금 위주로 금융자산 비중이 급증하는데 이와 같이 고유동성 자산 비중이 증가할수록 자산이전 확률이 높아지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은 격화
 - 상속시장이 양적·질적으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상속이 리테일 시장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기관들은 리테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상속시장에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
 - 지식과 별거비용이 높거나 자산편재비용이 높은 지역에서는 상속 유출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역 금융기관들은 조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 **금융기관은 생전증여와 보험기능 등을 강조한 다양한 상품 라인업으로 상속시장 확대 대응**
 - 금융기관은 고령화 대응에 이어 상속시장을 특화하여 대응할 필요. 대규모 상속과 계좌이전이 진행되는 과정에 금융기관은 신탁 등 자산관리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 필요
 - 상속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아 부동산 관련 서비스 전문성으로 모객을 하는 것도 중요
 -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이 상속인에게 자산운용 방안 제안하는 능력을 우선 제고할 필요. 상속 수속시 얻은 상속인들의 고객정보를 관리·분석해 영업에 활용하거나 정기적으로 고객의 거래상황에 주목하여 고객 니즈에 적합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역량 축적

표2 | 상속관련서비스의 역할

		채널정비	자산파악	차세대대책	직접획득
각 금융기관의 공통적인 대응	사업승계지원		○	○	
	일시불 중신보험				
확대되고 있는 대응	유언관련 업무	○	○	○	
	상속 세미나·상담	○			
일부 금융기관의 대응	상속정기예금				○
	상속지원시스템		○		
	유언장 관련	○	○		

자료 : 전국은행협회

- 상속부문에서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상속대책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강화할 필요. 고객이 거래 금융기관 집약과 자산 정리를 통해 자산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를 위해 상속관련 상품의 라인업을 확충하고, 사전상속 증여, 상속관련 전략수립 등 특수 서비스에서도 강점을 발휘할 필요
 - 상속에 따른 자산이전은 금융기관의 측면에서 보면 '계좌이전'이며, 금융기관간 상속자산을 둘러싼 리테일 부문의 경쟁

2. 종합적인 상속대책으로 대응: 상속대응 종합 상품 라인업

- 지방은행은 상속에 따른 자산이전을 억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상속관련 서비스, 상속정기예금 등을 통해 상속자금의 유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 상속시장이 확대될수록 지방에서 대도시권으로 자산이전이 확대되면서 지방은행의 상속자금 유보율은 도시은행의 절반 수준(42%)으로 리테일 영업부진으로 수익성 악화
 - 지방은행들은 자산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상속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증여신탁, 유언신탁 등 상속과 관련한 대부분의 상품을 라인업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

표3 | 후쿠오카은행 상속관련 서비스 라인업

상속서비스	손님의 니즈	상속 서비스	손님의 니즈
1. 매년증여신탁 생전증여 관련 수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수속의 대행을 원할 때 • 증여거래 기록을 확실히 남기려는 경우 • 매년, 증여수속을 잊지 않도록 도움 • 가족이 장례비용 등을 바로 받게 준비 	4. 재산정리업무 상속인 의뢰로 수속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내용이 복잡하고, 분할방침이 정해지지 않거나 상속 수속 시간이 없고 • 상속수속에 어려움이 많거나 • 상속인이 많고, 상속인이 멀리 거주
2. 안심신탁 가족이 곤란 없도록 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생활비 등의 준비 • 퇴직금을 계획적으로 사용 	5. 상속수속기본패키지 (수속대행) 상속인의 사무수속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속방법을 모르는 고객에 대응 • 수속시간이 없거나 익숙치 않은 경우 • 상속인이 많고, 상속인이 멀리 거주
3. 유언신탁 자신의 의지대로 정확하게 상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기 • 상속인들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상속인들의 상속수속 부담을 경감 	6. 상속인확정서비스 7. 유품정리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적을 수집하여 상속인을 확정 • 중요한 유품 정리 서비스

자료 : 후쿠오카은행

표4 | 상속정기예금

특징	상속자금을 고금리로 안전하게 운용하려는 수요에 대응한 상품으로 주로 지방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취급. 대형 은행과 신탁은행은 취급하지 않음
취급금융기관의 목표	상속자금이 지방에서 대도시권으로 이전되는 추세를 억제
장점	우대금리 수령(유산분할협의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
단점	금융기관 점포에서 다양한 수속이 필요하고, 거래은행이 아닌 타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
대표 상품	쓰루오카 신용금고가 100만원 이상 3개월짜리 예금에 연 1.5%의 금리를 제공 * 미쓰비시UFJ은행의 3개월 슈퍼정기적금 금리가 연 0.01%이므로 150배의 금리를 제공하는 셈

자료 : 전국은행협회

- 또한, 지방은행만 취급할 수 있는 ‘상속정기예금’을 통해 자산이전을 억제하는데 이는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상속자금을 고금리로 안전하게 운용하려는 수요에 대응한 상품으로 지방은행이나 신용금고가 취급하며, 대형은행이나 신탁은행은 취급 불가
- 한편, 지방 신용금고 등은 ‘法·個 일체형 영업’ 등 고객과의 밀착을 통해 유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상속자산의 높은 유보율과 수익성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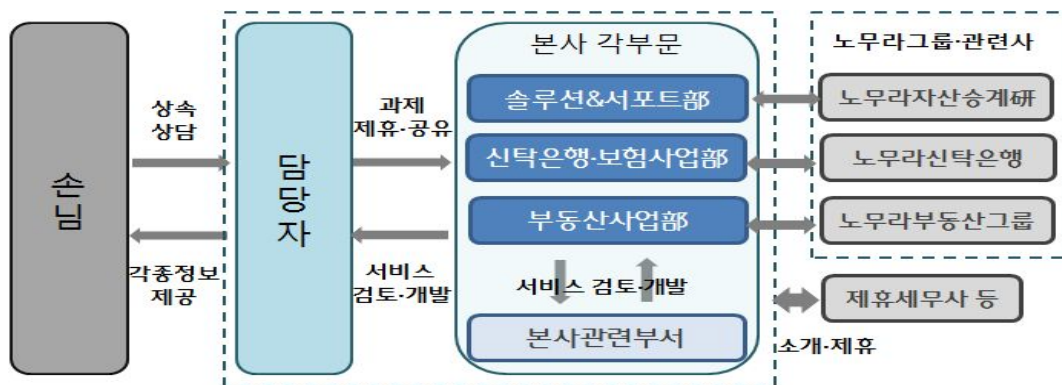
■ 보험사는 사망보험 등 보험상품에 상속인 지정, 비과세 혜택, 납세자금 확보 등 장점을 보유해 상속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

- 보험은 상품 특성상 상속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1)가족간 원활한 유산분할, 2)납세자금 준비, 3)상속세 부담 경감 등 고유의 강점을 보유해 가계자산 중 보험자산의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 가능
 - 최근에는 초고령화로 의료보험, 양로보험이 확대되어 리테일에서 보험사가 경쟁력을 제고
- 보험의 장점은 보험금의 수령인 및 분할비율을 지정할 수 있어 유산분할시 가족 간 분쟁을 경감할 수 있고, 통상 상속발생 후 10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일괄 납부하는 상속세 납입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이용할 수 있어 유동성 대책으로도 활용 가능
- 또한 생보사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가 있어서 상속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점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가 존재
 - 비과세한도액 = 500만엔×법정 상속인의 수

■ 증권사도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우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라인업을 구성 상속시장에 참여

- 대표격인 노무라증권 사례를 보면, ①분할협의 불성립, ②현금준비, ③고액 상속세 등

그림18 | 노무라증권 상속 솔루션



자료 : 노무라증권

3가지 상속관련문제 해결을 위해 ①유산분할대책, ②납세자금대책, ③상속세의 경감 대책 마련을 포괄하는 상품을 구성

- 노무라는 상속세미나, 유언신탁, 상속세액 시산, 유산정리업무, 가업승계컨설팅, 보험 활용, 생전증여최적화툴 제공, 제휴부동산관련회사의 소개, 제휴세무사 소개 다양한 서비스를 전사 차원에서 종합적하여 제공

■ 금융기관의 대응 결과, 상속이 리테일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

- 이제는 상속시장의 확대와 자산구성변화가 일본 리테일 시장의 특성과 규모를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의 적절한 대응이 생존에 중요. 모든 금융기관들은 고객정보를 관리·분석하여 영업에 활용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고객의 거래상황을 살펴서 니즈에 맞는 제안을 해야 하고자산운용 제안능력의 강화가 필요. 또한
- 상속대책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강화. 금융기관 집약과 자산정리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자산 획득 가능. 실제 인터뷰조사에서도 상속수속의 어려움을 알고, 자산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생전증여는 손자세대 이후의 계좌개설을 촉진

3. 가계자산 구성 변화의 효과: 투자상품 수요 증대

■ 상속을 통해 가계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투자자산의 수요는 증대할 것으로 예상

- 초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노상속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상속자산은 60대에 집중. 60대 이상이 금융자산의 60%를 보유하는 등 상속이 가계자산의 구성 변화 및 편중현상을 심화시키는 추세
 - 토지 등 비금융자산까지 포함하면 60대 이상 고령층이 가계자산의 70% 가까이를 보유
 - 상속자산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세대간뿐만 아니라 세대내 자산격차가 점진적으로 확대
- 상속을 통해 자산이 증가한 고령층 가계들은 투자상품의 보유를 늘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전체 가계자산 중 투자상품의 비중 확대로 연결
 - '18년 기준 일본 전체의 가계금융자산 구성비는 현금 51.5%, 투자상품 18.2%, 보험·연금 24.5%, 기타 5.9%이며, 한국은 순서대로 43.1%, 24.6%, 25.2%, 7.0%를 나타냈음
- 상속자산의 구성은 부동산 비중이 하락하고, 현금, 예·저금,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로 자산간 이전 가능성은 확대되는 경향
 - 최근 고소득층은 부동산을 현금 등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전환하여 상속하는 경향
- 상속은 세대간 자산이전 효과가 있고, 상속세는 자산재분배 효과가 있으며, 초고령화는 세대간의 자산이전을 지연하고, 상속세의 자산재분배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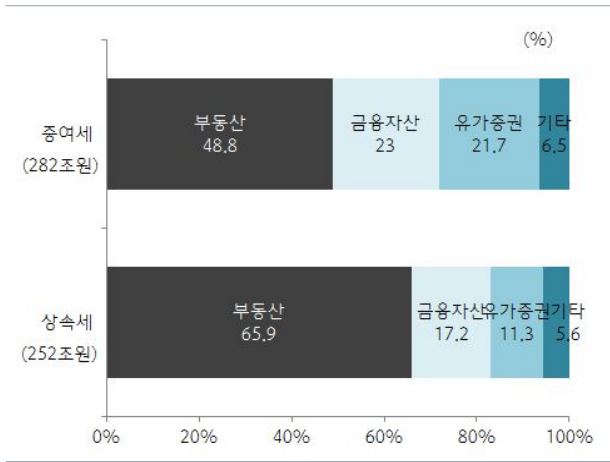
IV. 국내 상속시장 확대 가속화 전망

1. 국내 상속규모 2020년 100조엔 돌파

- **국내 상속규모는 2020년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최근 사전증여가 급증하는 등 상속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으로 금융기관의 대응이 본격화될 가능성**
 - 당연구소가 추정한 상속을 통한 세대간 자산이전 규모는 2016년 81조원, 2020년에는 104조원에 이르게 되며, 국세청 집계로도 사전증여가 가속화되는 추세를 확인
 - 국세청은 '08~'16년 9년간 상속재산 251.6조원, 증여재산 281.9조원으로서 상속·증여 규모가 총 533.4조원이라고 발표
 - 종류별 상속재산은 부동산 65.9%, 금융자산 17.2%, 유가증권 11.3%, 기타 5.6%이었으며, 증여재산은 부동산 48.8%, 금융자산 23.0%, 유가증권 21.7%, 기타자산 6.5%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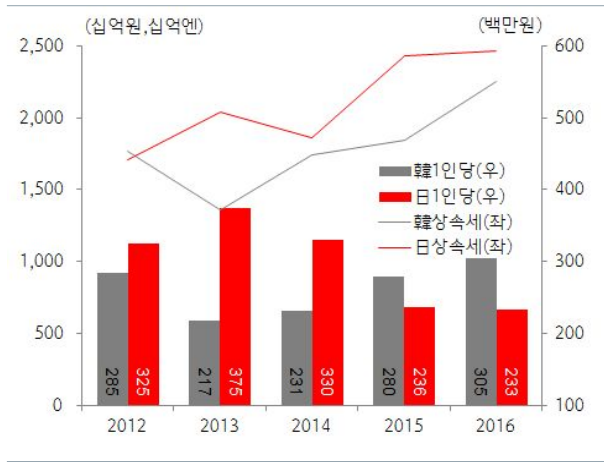
- **국내 상속자산은 부동산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며, 최근 부동산 자산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이 급증하는 추세. 이는 점진적으로 금융자산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
 - 상속자산의 구성은 가계자산 구성과 거의 유사하며, 국내 가계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것이 상속자산의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
 - '08~'16년간 상속세 부과대상 중 부동산 비중이 65.9%, 금융자산은 28.5%에 불과
 - 부동산가격 상승 및 세제개정이 상속세 과세대상의 증가를 가속화함으로써 2014년 이후의 상속세 급증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그림19 | 한국 상속·증여 규모와 자산 종류(2008~16년)



자료 : 국세청

그림20 | 한·일 상속세 비교



주 : 1)1인당 상속세 규모는 피상속인 기준, 2)원/100엔 환율은 1,000원으로 가정
 자료 : 한국 국세청, 일본 국세청

- '13~'16년 3년간 상속세는 65.5%(연평균 18.3%)의 빠른 속도로 증가

- 부동산은 현금화 등 자산간 자금이동 과정을 거친 후 금융기관간·지역간 이전이 진행.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국내 금융시장이 일본보다 협소하고, 지방은행의 비중도 낮으며, 증권사 등 비은행의 비중도 낮아 금융기관간 자산이전은 제한적

- 다만 지방경제의 상대적 쇠퇴가 진행되면 상속자산의 지역간 이전은 증가할 가능성

2. 한·일간 상속·증여세 비교: 상이한 증여세 체계

■ 한·일간 상속세율은 비슷하지만, 증여는 크게 달라 양국간 상속·증여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

- 한·일 상속세율은 매우 유사한데 기초공제후 과세액은 원/100엔 환율을 1,000원으로 가정하면 1억원까지는 동일하고, 이후에도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추세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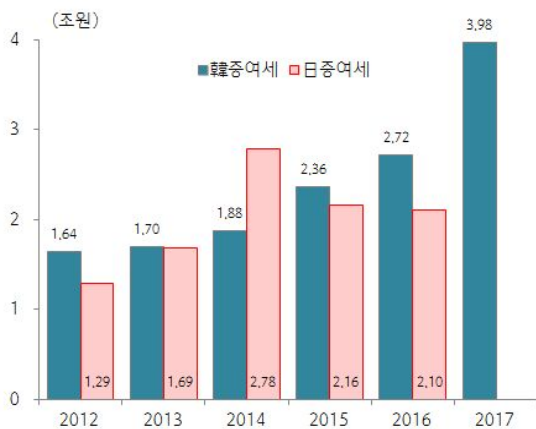
- 반면, 증여세 구조는 매우 상이한데 한국은 상속과 증여에 동일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일본은 증여세가 상속세의 몇 배로 증가. 한국은 사전증여의 유인이 큰 반면 일본은 과중한 증여세 부담 때문에 증여가 크게 위축

- 증여세 기초공제는 연간 110만엔. 세율은 금액에 따라 10%~55%(3,000만엔 이상) 적용 하되 상속세보다 낮은 금액에서 높은 세율 적용

- 상속세 규모는 일본이 한국의 10배 정도인데, 증여세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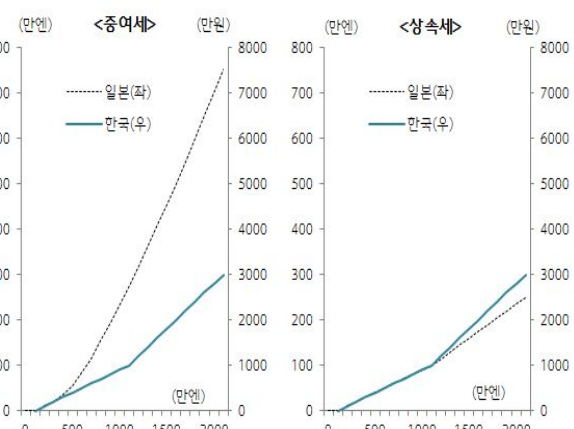
- 상속세를 한·일간 비교하면 2016년중 일본이 한국에 비해 사망자수는 4.6배인데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수는 14.3배에 달하지만 납부액은 8.6배에 불과. 이는 한국의 상속세

그림21 | 한·일 증여세 비교



주 : 원/100엔 환율은 1,000원으로 가정
 자료 : 한국 국세청, 일본 국세청

그림22 | 한·일의 상속·증여세 비교



주 : 1)세로축이 기초공제 이후의 상속·증여액, 가로축이 세액
 2)원/100엔 환율을 1,000원으로 가정
 3)한국은 증여세와 상속세에 동일 세율 적용
 자료 : 한국 국세청, 일본 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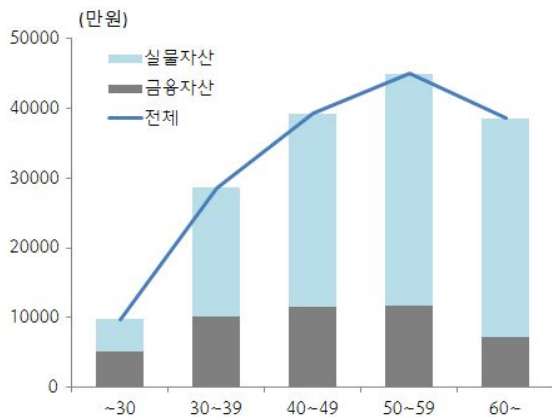
면제비율이 높고, 소수에게 자산이 집중된 것이 원인으로 보임

- 2016년 국내 상속세 통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수는 7,393명으로 사망자 28.1만명 대비 2.63%였으며, 총상속 재산가액은 12조 8,420억원, 결정상속세액은 2조 2,561억원
 - 일본은 '16년 과세대상 피상속인 105,880명/사망자수 129.6만명 8.17%가 과세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14조 8,021억엔 결정세액은 1조 9,311억엔
 - 일본 피상속인당 상속세(백만엔): 33.6('11) → 32.5('12) → 37.5('13) → 33.03('14) → 23.6('15) → 23.3('16)
- 증여세를 비교해보면 2016년 일본의 증여세 납부액은 2,104억엔인 반면 한국은 2조 5,817억원으로 비슷한 수준. 상속세는 일본이 한국의 10배 상회하는데 증여세는 한국이 더 큰 상황. 상속 및 증여세율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
 - '16년 한국의 경우 증여세는 신고 116,111건, 증여재산가액 18조 2,082억원으로 상속재산가액 12조 8,419억원을 상회.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하는 비중이 크다고 판단
 - 한국은 양도세 중과 등에 대비해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최근 증여세가 급증하였고, 일본은 증여세 비과세 조치의 영향으로 증여세가 감소추세로 전환
 - '16년 기준 상속세/증여세 비율은 한국이 0.82배인데 반해 일본은 11.7배

3. 국내 상속시장 : 성장 가속화 가능성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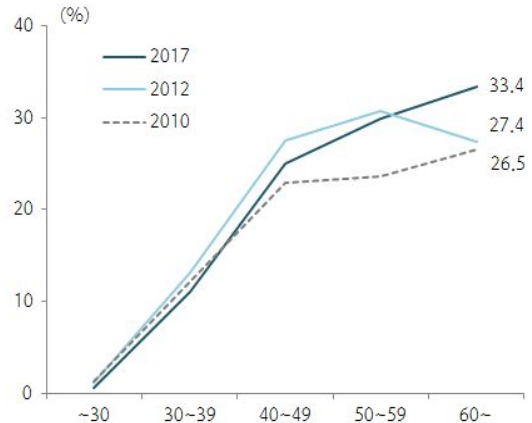
- 국내에서도 베이비부머의 고령층 편입과 노노상속의 증가로 가계자산의 고령층 집중이 가속화 되면서 상속시장의 규모와 내용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

그림23 | 한국 연령별 자산보유액(2017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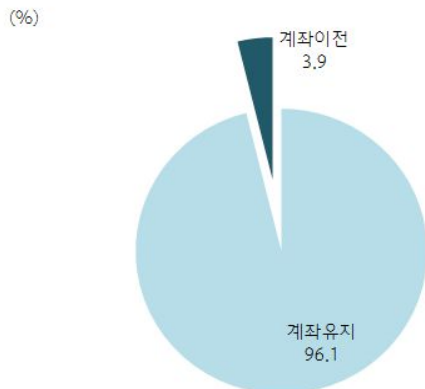
그림24 | 한국 연령별 자산보유 비율



주 :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수와 연령대 평균 자산액의 곱으로 추정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현재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는 고령층 집중도는 낮으나 2015년부터 베이비부머들이 고령층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고령층의 가계자산 보유비중이 급격히 증가
 - 일본 고령층의 자산보유 비중은 20년간('89~'09년) 2배(31.9%→58.7%)로 증가. 한국도 '12년~'17년 5년간 27.4%에서 33.4%로 급증하여 고령층 보유비중이 빠르게 증가 시작
 - 베이비부머가 모두 60세 이상이 되는 '23년에는 고령층 자산보유비중이 40%를 돌파 예상
 - 수년 내 자산을 형성한 베이비부머들이 고령층 편입이 계속되고, 국내에서도 노노상속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등이 작용하여 고령층의 자산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은 50대가 가계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 '17년 현재 세대주가 50대인 세대의 자산보유 비중이 25.4%, 평균금액은 4억 4,981만원으로 전체의 29.9%를 50대가 보유
 - 고령층은 50대에 비해 '12년에는 73.2%, '17년에는 85.7%의 자산을 보유. 5년간 12.5%p 상승한 추세를 감안하면 '25년에는 50대와 고령층의 자산보유금액이 비슷한 수준에 도달
- **국내 상속시장에서도 수년 내 급격한 변화 시작 예상. 금융기관은 자산운용 기능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정하고, 보험기능을 활용하며, 데이터분석을 결합한 토탈 솔루션으로 대응할 필요**
- 현재 국내에서는 상속 후 금융기관 이전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인데 그 원인으로 ①지방은행이 강한 일본과 달리 국내는 이미 대형은행들의 점유율이 매우 높아 상속에 따른 지역간·금융기관간 자산이전이 제한적이고, ②상속자산 중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간 자산이전 수요가 낮으며, ③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증여세를 선택하는 비중이 커 상속시장 확대가 제한되고, ④국내 금융기관들의 상속 관련 상품의 다양성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음

그림25 | 상속·증여 후 계좌이전 비율(2017년)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이전 관련 금융수요 조사 및 시사점,” 201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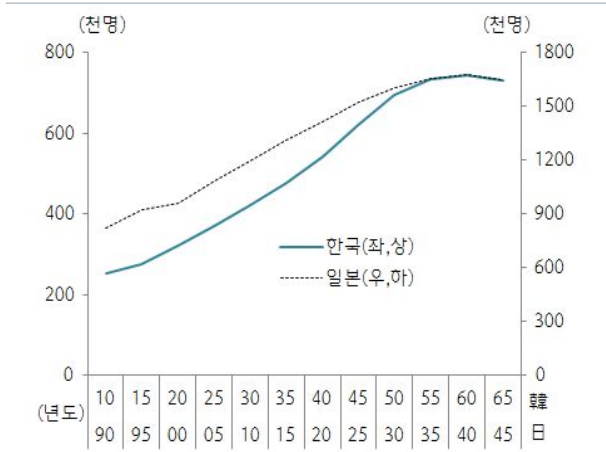
표4 | 상속·증여 후 저축·투자시 선호 금융기관

구분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운용사	투자자문사	기타
20/30대	47.1	5.9	5.9	14.7	20.3	5.9
40대	61.7	14.9	4.3	6.4	12.8	0.0
50대	66.7	6.1	7.6	7.6	9.1	3.0
60대	100.0	0.0	0.0	0.0	0.0	0.0
70대 이상	93.3	0.0	6.7	0.0	0.0	0.0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이전 관련 금융수요 조사 및 시사점,” 201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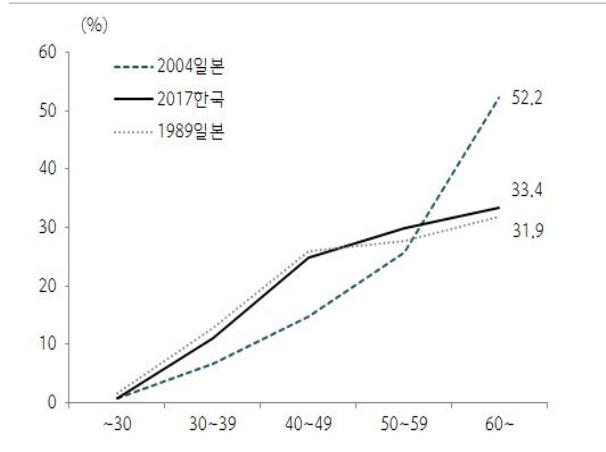
- '17.12월 당연구소 서베이에 의하면 상속·증여 수증자의 3.9%만 계좌를 이전
- 그러나, 고령층 가계자산 보유와 사망률 증가가 중첩되면서 상속시장 확대가 가속화됨으로써 향후 상속의 영향이 확대되고, 은행을 중심으로 상속자산 유치경쟁 심화가 예상. 또, 상속인과 피상속인간 거래은행이 다르다면 은행간 자산이전 발생 가능성 증가
 - 향후 5년후 상속시장은 사망자수 15% 이상 증가, 고령층 가계자산 25% 이상 증가가 예상되어 상속시장은 현재보다 45% 정도 확대 예상
- 향후 10년간 한국의 연령별 자산보유 비중은 60대의 자산비중이 크게 증가하나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의 자산보유 비중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베이비부머의 후기 고령층 편입이 시작되는 2030년 이후 일본 수준의 적극적 자산이전 진행이 가능
 - 연령별 가계자산 보유 비중을 비교하면 '17년의 한국과 '89년의 일본이 거의 유사. 일본에서는 15년 후인 '04년에 고령층 보유비중이 50%를 상회
- 베이비부머의 인구비중과 자산 규모, 사망자수(피상속인수)의 높은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상속시장의 변화가 일본보다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기관들은 가속화될 변화속도를 감안하여 조기에 체계적인 준비에 착수할 필요
 - 한국 사망자증가율(%): 34.3('16~'25)→28.2('26~'35)→30.4('36~'45)→18.3('46~'55)
 - 일본 사망자증가율(%): 17.3('91~'00)→24.1('01~'10)→20.2('11~'20)→12.0('21~'30)
 - 고령층은 은행을 압도적으로 선호하지만 50대 이하에서는 다양한 금융기관을 선호하고, 특히 저연령대에서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선호가 크게 증가. 5~10년 뒤의 상속 시장에서는 은행고유의 기능만으로는 점유율 유지가 어려운 환경이 전개
- 금융기관은 상속자산은 물론 사전증여, 상속컨설팅 등 상속 상품라인업을 갖추고, 고객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산운용 기능을

그림26 | 한국 사망자수 추계



자료 : 통계청

그림27 | 한·일 연령별 가계자산 보유 비중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일본 재무성

- 핵심으로 설정하고, 보험기능을 활용하며, 데이터분석을 결합한 토털 솔루션이 필요
- 특히 국내에서는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부동산의 유동화 등으로 사전증여, 현금화 등의 기능을 발전시켜 집중할 필요

<참고문헌>

- 이경진·주윤신, "자산이전(증여·상속) 관련 금융수요 조사 및 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7
- 小野明子, "相続は、金融機関にとってのビジネスチャンス," Financial Information Technology Focus, 野村総合研究所, 2018.2
- 寺林暁良, "地域金融機関の相続対策にかかる取組みの分析," 金融市場 2012-11号, 農林中金総合研究所, 2012
- 野尻哲史, "相続に伴う資産、世代、地域、金融機関間の資金移動:相続人5000人アンケート," フィデリティ退職・投資教育研究所, 2017.1
- 宮本弘之, "なぜ日本人の金融行動がこれから大きく変わるのか?," 東洋新書, 2015
- 森駿介, "相続資産の移転と地域のリテール金融市場の将来," 大和総研調査季報 Vol.27, 2017
- 峪和生, "相続税の課税財産に関する一考察: 新制度創設に係る検討," 税務大学校論叢第88号, 2017.6
- 財務省, "相続税・贈与税の説明資料," 2015.10

하나 금융정보

Hana Finance Info.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TEL 02-2002-2200

FAX 02-2002-2610

<http://www.hanaif.re.kr>